

울산광역시 동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1688호

2026. 9. 17.(목)

입법예고

- 울산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

공 고

-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공고 8

안 내	○ 동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(정기)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수요일 오전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	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	○ 동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동구 홈페이지(www.donggu.ulsan.kr) → 동구소식 → 고시/공고 → 동구공보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 동구

편집 : 기획예산실(☎ 209-3047, 행정 3047)

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-922호

울산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년 9월 17일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

1. 제정이유

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및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,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기증희망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생명나눔 주간 운영,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
3. 조례 제정안: [붙임 1]

4. 근거법규: [붙임 2]

- 가.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
- 나.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7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(참조: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직접 방문

1) 주소: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(화정동),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

2) 팩스: 052)209-4079

3) 전자우편(E-mail): smek1211@korea.kr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(전화 (052)209-409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(<http://www.donggu.ulsan.kr>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조 례 명	울산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			
의견제출자	성명/단체명		전화번호	
	주 소			
조례안 조문	검토의견(의견제출 내용)			

「울산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

[붙임 1]

울산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및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.

제4조(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1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
2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
3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의 추진 결과를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제5조(기증희망등록 업무)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,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6조(예우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보건소 진료비의 감면
2. 구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·이용료·수강료·주차요금 등의 감면. 다만, 관계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.
3.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생명나눔 주간 운영) 구청장은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에 따른 생명나눔 주간에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, 의료기관 및 관계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□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·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.

1.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(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)
2.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·홍보 및 교육·홍보사업에 대한 지원
3.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
4.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·이식 관련 교육
5.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·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
 - 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
 - 나. 「여권법」 제4조에 따른 여권
 - 다. 「도로교통법」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
 - 라. 「선원법」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

제32조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26조의2(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) ① 법 제 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나눔 주간 중 장기등기증자 추모 및 기념 행사
2.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
3.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상담, 장례지원,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
4.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별지 제26조의2서식의 생명나눔증서 발급
5. 법 제32조의2에 따른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
6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-924호

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공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 및 「울산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및 변경하고 공고합니다.

2026. 9. 16.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

구분	등록번호	상점가명	대표자	업무구역	면적	점포수
신규	2026-4	서부성원상떼빌 골목형상점가	김재길	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450, 서부성원상떼빌 116동(상가동)	543.55㎡	21개
"	2026-5	전 하 골목형상점가	김후남	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로, 녹수5길, 녹수10길 일대	2,987.96㎡	38개
"	2026-6	꽃바위 골목형상점가	조기웅	울산광역시 동구 문현로, 화문로, 문재2길·3길·5~7길, 꽃바위 3길~5길, 꽃바위로 일대	22,219.5㎡	224개
변경	2026-7	동울산만세대 골목형상점가	최태호	울산광역시 동구 진성1길, 3길, 13길, 14길 일원	5,595㎡ → 7,835.7㎡	56개 → 82개